

2008. 11. 26(수)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39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5

<의안번호 제2008- 47호>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중 전상공상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유지 및 명예를 높여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함(안 제1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 유공자

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삭제함
다.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함(안 제4조제1호).

○ 월 1만원 → 월 3만원 내

라.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안 제4조제1호).

○ 의거, ~의 규정에 의한 → 따라, 에 따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366백만원)

다. 입법예고(2008. 9. 25 ~ 10.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 내로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상공경, 공상공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을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과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전자정부법]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의안번호 제2008- 48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주민전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 (안 제1조, 제2조).
- 나.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 (안 제5조제3항).
 -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7조, 제5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8. 10. 22 ~ 11.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편향 없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의안번호 제2008- 49호>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개정이유

-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감면 추정 제외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가 따로 운용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 감면

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제2항).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

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조례 제28조제1항 삭제

마.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명확화(안 제7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5조의4제3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7조제3호)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삭제 (안 제10조제4호).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임대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조문 수정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안 제12조)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안 제15조의4제3호)
- 주거용 부동산 → 주택 (안 제17조)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9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업무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21조).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의 명확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31조, 부칙 제3항(경과조치)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주택법」 제2조제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향교재산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7. 10. 8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되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는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농어촌정비법]

제27조(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900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제12조(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승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⑦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주택법]

- 제2조(정의 <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2007.4.20, 2007.7.19, 2008.2.29, 2008.3.21>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5.3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물유)"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①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2008.3.21>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향교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동산)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개정이유

- 출산이 집중된 20~30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군 내 젊은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개선하여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 또는 신설함(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행 :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 개정 : 아이를 출산한 자

○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를 말한다.

다. 출산장려 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엽산제 지원 신설 : 5개월분(안 제5조제3호)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4호)

- 현행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개정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라.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우리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관련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마.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및 업무관장 부서 신설(안 제20조제9호)

○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바.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 또는 신설함

○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 별지 제4호서식(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띄어쓰기

○ 정의는→뜻은 ~(이라 함은→~(이란/ 매 장인→명/ ~의거→따라

○ 만V(5)60세, 각V호, 셋째V이상, 되어V있고, 군V외, 범위V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 반영(245백만원)

다. 입법예고(2008. 10. 9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이부터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엽산제를 신설하며,

제20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그러나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산출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별지에서 신설하는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는 조례안 본문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서식을 제정할 수 있는데 조문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서식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제20조제9호와 관련된 별지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임산부의 신고등) ①임산부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보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개정 1999.2.8>)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

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다음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21조(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의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경비의 2분의 1 이내
 6.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중 불임수술을 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비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개정 1999.5.21>)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1, 2006.6.7, 2008.2.29>

1. 임신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분만·산후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수두·간염·볼거리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제2조 (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2006.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6.21>

- 제5조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 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6.6.8, 2008.3.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적법]

-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준용)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의안번호 제2008 - 58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제안이유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험시설 2개소는 병곡초등학교와 월성초등학교를 거창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구조의 보강이 필요하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권역주민과 추진위원회에서도 건물 신축을 원하고 있어 향후 활용도를 감안 폐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체험시설을 신축
- 북상 월성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사계절 언제든지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추진)

3. 취득재산의 표시

① 매입(부지 및 건물)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	수량(m ²)	공시지가/과세표준액	비고
총계				13,300	457,124	
폐교매입 및 체험시설 신축	소계			5,994	114,065	건설과 (병곡초)
	건물	북상면 병곡리 768-4번지 외 1	건물	486	81,518	
	토지	북상면 병곡리 768-4번지	학교용지	4,946	28,984	
		북상면 병곡리 768-3번지	답	562	3,563	
	소계			7,306	343,059	건설과 (월성초)
	건물	북상면 월성리1084-2번지 외1	건물	643	163,299	
	토지	북상면 월성리1084-2번지	답	53	779	
		북상면 월성리1084-3번지	도	452	3,282	
		북상면 월성리1084-4번지	학교용지	4,956	147,689	
		북상면 월성리1084-6번지	답	188	3,741	
		북상면 월성리1084-9번지	도	371	2,938	
		북상면 월성리1085-15번지	도	53	7,973	
		북상면 월성리1091-2번지	도	11	41	
	북상면 월성리1254번지	대	579	13,317		

② 신축(건물)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수량(m ²)	사업비	비고
계				1,437	1,951,800	
취득 (신축)	건물	북상면 병곡리 768-4	건물	362	506,800	건설과
		북상면 월성리 1084-4	건물	675	945,000	
		북상면 월성리 1084-4	건물	400	500,000	문화관광과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5. 검토의견

- 폐교 매입 및 체험시설 신축안은 북상면 월성리 외 4개리 7개 마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106백만원(지원 6,994백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주민부담 11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체험관, 자연체험관, 주차장 조성, 계곡쉼터 등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병곡초등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은 산림체험관(사업비 506,800천원)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 월성초등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은 자연체험관(사업비 945,000천원)과 월성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 펜션(500,000천원)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에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8 - 59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11. 19.

2. 제안이유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벽면균열과 누수가 발생, 이전신축이 시급하여 주차공간 및 진료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취득재산의 표시

① 매입(부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	수량(m ²)	공시지가/사업비	비고
계				1,661	46,820	
마리보건지소	토지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전	661	36,220	보건소
모전보건진료소	토지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답	1,000	10,600	

2] 신축(건물)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수량(m ²)	사업비	비고
계				485	948,500	
취득 (신축)	건물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건물	336	598,000	보건소 (마리보건지소, 모전보건진료소)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건물	149	350,500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5. 검토의견

- 마리보건지소와 모전보건진료소의 토지 매입 및 신축안은 200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